

의안번호	2209338
의 퇴 인	안도걸 의원
회 답 일	2025. 3. 25.
추 계 번호	25F1859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신설 등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0조의35 (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)	○ 전략산업제품 관련 생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판매가격의 일부를 법인세 및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 신설 － 공제대상: 전략산업제품 생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※ 전략산업제품: 신성장·원천기술, 국가전략기술,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제품 － 전략산업제품 요건: ① 내국인에 의해 제조한 재화 ② 최종 제조공정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재화 ③ 국내에서 최초로 사용된 재화 － 공제율: 판매가격의 10% － 공제한도: 해당연도 기업의 법인세·소득세의 10% － 적용기한: 2035.12.31.	
2	안 제100조의36 (전략산업 국내생산세액공제 환급 특례)	○ 전략산업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인 기업이 과세연도에 납부할 금액이 없거나 법인세·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발생한 미공제금액에 대하여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신설 － 환급한도: 미공제금액의 50% － 적용기한: 2035.12.31.	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00조의35(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100조의36(전략산업 국내생산세액공제 환급 특례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및 해당 세액 공제의 미공제금액 환급 특례를 신설하는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(안 제100조의35 및 제100조의36 신설)
 - 안 제100조의35는 신성장·원천기술, 국가전략기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제품(이하 ‘전략산업제품’) 관련 생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전략산업제품을 최종생산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의 일부를 세액 공제하는 특례를 신설
 - 공제대상: 국가전략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기업
 - 공제요건:
 - ① 해당 재화가 내국인에 의해 제조
 - ② 해당 재화의 최종생산이 국내에서 완료
 - ③ 해당 재화가 국내에서 최초로 사용
 - 공제내용: 판매가격의 10%
 - ※ 단,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분은 본 공제에서 차감
 - 공제한도: 해당연도 기업의 법인세·소득세의 10%
 - 적용기한: 2035.12.31.
 - 안 제100조의36은 전략산업 국내생산세액공제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미공제금액이 발생한 경우, 기업이 미공제금액의 일부를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
 - 환급요건: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한정
 - 환급한도: 미공제금액의 50%
 - ※ 단, 환급대상인 미공제금액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
-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전략산업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법인세액 및 해당 제품의 판매가격 규모 등을 추정해야 하나, 전략산업제품의 품목 등 시행령 위임사항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고 관련 자료가 부재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 - 전략산업제품의 범위, 판매가격의 산정방식 등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현 시점에서 공제대상을 특정할 수 없음

- 전략산업제품은 국가전략기술, 신성장·원천기술을 활용한 제품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기술 등을 활용한 제품도 포함되어 있는 등 세부적으로 특정 제품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현 시점에서 판단할 수 없음
- 또한, 세액공제의 기준이 되는 판매가격의 산정방식 등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판매가격을 추정할 수 없음
- 또한, 전략산업제품의 생산 및 판매량 중 내국인에 의한 제조, 국내에서의 최초 사용, 최종생산 여부 등의 세액공제 요건을 만족하는 비중 등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여 향후 세액공제 규모를 추정할 수 없음
 - 전략산업제품 중 기술이 규정되어 있는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·원천기술이라 하더라도 이를 활용한 제품의 생산 및 판매량 중 국내에서 최초로 사용되는 비중 등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여 이를 바탕으로 세액공제 규모를 추정할 수 없음
-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의 규모를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음에 따라 향후 동 세액공제의 미공제금액 발생에 따른 환급 등도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박정환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정환	02-6788-4835	jhpark83@assembly.go.kr